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3. 17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3월 1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3월 13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3. 17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측정장비 및 골밀도검사기를 설치함에 따라
체력 측정검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율 신설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별표(수수료 및 진료비)에 검사 수수료 4종 신설 (안 별표)
- 체력측정검사, 동맥경화측정검사, 체성분검사 및 골밀도검사 항목 신설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---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